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NRF
한국연구재단

2010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FAQ

- 기본연구 유형 I / 기본연구 유형 II / 모험연구 -

2010. 6.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과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지원팀

CONTENTS

Ⅰ. 공통사항 : 일반안내, 전년대비 차이점, 신청/참여제한 사항 등

1. 전년대비 주요 차이점 ····· 1
2. 세부사업 및 지원유형 안내 ····· 2
3.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항 ····· 2~3
4. 신청/참여제한 조건에서의 연구비 1억원의 기준 ····· 3
5. 기초연구사업에서의 1억원 이상 신청제한 ····· 3
6. 타 부처(보건복지부 등) 연구개발사업에서의 1억원 이상 ····· 4
7~9. 중견연구자 vs.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4~5
10. 신규과제 연구착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종료 ····· 5
11. 세부 유형별 신청가능 여부 ····· 5
12. '10년도 상반기 신진/여성/지역 선정자의 하반기 신청가능 여부 ····· 5
13. '10년도 이전 신진/여성/지역 선정자의 하반기 신청가능 여부 ····· 6
14. '10년도 이전 기본연구 선정자의 하반기 신청가능 여부 ····· 6
15. (구)학술진흥재단의 기초연구/기초과학연구 수행 시 신청가능 사업 ····· 6
16. 하반기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내 선정 · 지원 수 ····· 7
17. 전임/비전임의 정의와 구분 ····· 7
18. Post-doc/박사급연구원/시간강사의 신청 및 참여 ····· 7
19. 외국인 연구자/외국기관 소속 국내연구자 신청가능 여부 ····· 8
20. 신청가능한 민간연구소의 범위 및 해당연구원의 신청가능 사업 ····· 8
21. BK21사업 참여연구원/연구보조원의 참여가능 여부 ····· 8

Ⅱ. 사업 지원유형별 : 기본 유형Ⅰ / 기본 유형Ⅱ / 모험연구

22. 상/하반기 2회 공모의 차이 및 2회 신청가능 여부 ····· 9
23. 기본연구Ⅱ 및 모험연구에 대한 설명 ····· 9
24. 기본연구 내 신청과제들의 선정평가 ····· 10
25. 모험연구에서의 연구계획 내용 5쪽 이내 작성사항 ····· 10

CONTENTS

Ⅲ. 연구신청서 작성 관련 사항

26.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포함) 구분과 신청가능 인건비 ····· 11
27. 인건비와 직접비의 편성비율 및 산정제한 여부 ····· 12
28. 미지급용 인건비에서의 참여율 계상 기준 ····· 12
29. 연구보조원의 참여자격 ····· 12
30. 내/외부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에 대한 설명 및 기준 ····· 12
31. 과제별 지원규모 vs. 신청시 과제별 신청금액 ····· 12~13
32. 신청용 연구계획서의 영어로 작성가능 여부 ····· 13
33. 신청용 연구계획서의 금액단위 : 천원 vs. 원 ····· 13
34. 학생인건비 풀링제란? ····· 13
35. 소속기관이 학생인건비 풀링제 기관인지 확인방법 ····· 14
36. 학생인건비 풀링제 표(양식A602)의 작성방법 ····· 14~15
37. 연구수당의 산정기준 및 계상비율의 한도 ····· 15

Ⅳ. 기타 사항

38. '08년까지 (구)학술진흥재단 전신사업의 결과보고 vs. '09년 이후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결과보고 ····· 15
39. 청년인턴제의 '10년도 시행 여부 ····· 15
40. 연구책임자의 신청기간 및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승인기간 ····· 16

Ⅰ. 공통사항

일반안내, 전년대비 변경사항,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관련 등

1. 2009년도 사업과 2010년도 사업의 차이점(하반기 기준)은 무엇입니까?

2009년 하반기 대비 2010년도 하반기 사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09년</th><th>2010년</th><th>비고</th></tr>
<tr><td rowspan="11">전체개요
및
공통사항</td><td>총규모</td><td>254,590 백만원(4,678과제)</td><td>355,000 백만원(6,625과제 내외)</td><td rowspan="2">2010년도
상·하반기
전체 기준</td></tr>
<tr><td>신규규모</td><td>204,240 백만원(3,562과제)</td><td>200,665 백만원(3,808과제 내외)</td></tr>
<tr><td rowspan="4">세부사업
(지원형태)</td><td>-</td><td>기본연구_유형 I (개인)</td><td rowspan="4">*2010년도
신규사업

하반기 기준</td></tr>
<tr><td>기본연구(협동)</td><td>“폐지”</td></tr>
<tr><td>-</td><td>*기본연구_유형 II (개인)</td></tr>
<tr><td>-</td><td>*기본연구_모험연구(개인)</td></tr>
<tr><td rowspan="6">신청 및
선정 제한</td><td rowspan="3">기초연구사업에서 1억원 이상(간접비 포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td><td>기초연구사업에서 1억원 이상(간접비 포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td><td rowspan="6">- 풀뿌리 개인연구의 저변확대라는 합목적성 강화

- 연구과제 신청 관리 및 선정평가의 효율성·다양성 제고</td></tr>
<tr><td>※ 집단연구사업에서의 세부과제 책임자도 포함</td></tr>
<tr><td>※ 단, 기반구축사업(연구소재은행, 전문연구정보센터, 중점연구소)의 연구책임자는 신청 가능</td></tr>
<tr><td>-</td><td>중견연구자 및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비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 제한</td></tr>
<tr><td>기본(협동)에 1과제만 신청
(※하반기 기준)</td><td>기본연구(유형I, 유형II, 모험연구) 중 1개만 신청 가능(※하반기 기준)</td></tr>
<tr><td rowspan="2">상반기에 신진/여성/지역에 신규로 선정되었더라도, 기본에 선정되지 않았으면 하반기 신청 가능</td><td>상반기에 기본/신진/여성/지역 중 어느 하나에 신규로 선정되었다면, 하반기에는 신청 불가능</td></tr>
<tr><td>※ 2010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내에서는 상·하반기 모두에 걸쳐 1과제만 선정·지원</td></tr>
<tr><td>선정평가</td><td>PM중심의 학문분과별
서면평가 및 최종 선정과제 추천</td><td>- 기존 PM중심의 학문분과별 선정평가 방식을 유지(“좌동”)
- 단, 기본연구 신규예산의 5% 범위 내에서 PM(학문분과 단장)이 신규과제를 선정</td><td>- PM의 권한 및 전문성에 대한 지속적 강화</td></tr>
</table>

구분			2009년	2010년	비고
세부단위사업	기본연구	총규모	188,700 백만원(3,065과제)	258,270 백만원(4,731과제 내외)	2010년도 상·하반기 전체 기준
		신규규모	159,877 백만원(2,611과제)	152,380백만원(2,989과제 내외)	
		지원유형 및 형태/규모	개인연구(상반기) : 50백만원 내외 협동연구(하반기) : 100백만원 내외	※ 2010년도는 모두 개인연구 형태로 상/하반기 2회 지원 유형 I (상/하반기) : 60백만원 내외 유형 II (상/하반기) : 35백만원 내외 모험연구(상/하반기) : 40백만원 내외(1년차)	- 간접비 포함 금액 - 개인연구 확대 및 지원비 증가 - 신규사업 시행
		신규사업	-	- 소규모 다년지원 유형 신설(유형 II) : 35백만원/년, 5년(3+2) ※ 유형II는 상반기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추가지원 - 도전적·창의적「모험연구」신설 : 40백만원(1년차), 60백만원(2~3년차)	
		선정평가	PM중심의 서면평가 및 최종 선정과제 추천	- 유형 I 및 II의 경우는 "좌동" - 단 모험연구의 경우, 신규예산의 5% 범위내에서 PM(학문분과 단장)의 후보과제 추천 및 평가를 통한 선정과제 확정 ※ 2010년도 1년차(예비연구)의 경우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적용	

2.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서 세부사업 및 지원유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하반기 기준)?

2010년도 하반기 일반연구자지원사업내 세부사업 및 지원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명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세부사업	기본연구		
	지원유형	유형 I	유형 II	모험연구

3.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범위 조건은 무엇이며, 2010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신규신청 및 선정 과제수와는 어떻게 연계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이 이루어집니까?

- 관련 규정에 따라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범위는 총 5개까지 가능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3개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는 연구비 1억원 이하(간접비 포함, 연간연구비 기준)의 연구과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2010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신규신청 및 선정과제는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규모는 모두 1억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09년도까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기본(기초)연구 협동연구 또는 공동연구 선정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비가 1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참여과제수 체크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기 참여제한 조건은 **연구개시일 기준('10년도 하반기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경우 '10.09.01)으로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이내('11.03.01 이전)에 종료**될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검증은 2010년도부터는 연구신청관리시스템(한국연구재단 연구마루)에 신청시 **자동으로 스크린 될 예정**이며, 상기 참여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2010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이 확정이 된 이후에도 연구마루시스템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신청요강의 신청/참여 제한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구비 1억원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연구비 1억원은 **1년당 지원되는**(단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 다년과제의 경우 2년차 및 3년차 등) **연간 연구비**로서 **간접비 등이 모두 포함된 총 결정연구비**입니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에서 연구비 1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총 3개까지 연구책임자로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신청 시 기초연구사업에서 1억원 이상 연구과제 책임자를 신청 제한하는 것과 연결이 잘 안됩니다.

➔ 총 3개까지 연구책임자로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교과부 소관 전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건이고, 타 기초연구사업에서 1억원 이상 연구과제 책임자에 대한 신청제한은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으로서 별개의 것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1억원 이상의 연구과제 1개를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을 제외한** 여타의 2010년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에 2개까지 연구책임자로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6. 교과부가 아닌 타 부처(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 소관의 연구개발사업에서 1억원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합니까?

➔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신청 및 참여제한 사항은 **'교과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7. 중견연구자 및 리더연구자지원사업에서 1억원 미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도 신청이 제한됩니까?

➔ 하반기 연구개시일('10.09.01) 기준으로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이내('11.03.01 이전)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 중견연구자 및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을 기(旣)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이 제한됩니다.

8.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 동시 신청은 가능합니까? 그리고 동일한 연구주제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서 연구책임자로서 기(旣)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없다면 일반연구자지원사업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 연구주제로 각각에 대한 신청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비 규모가 다르므로 연구계획 및 내용에 차이가 있어야 좋을 것입니다.

9.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양쪽에 모두 선정이 가능합니까?

➔ 아닙니다.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중에서 1과제만 선정되며,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크고 상위수준의 사업인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우선 선정·지원됩니다.

10.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규과제 연구착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종료는 신청 가능'은 모든 제한사항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신청요강에서 언급되고 있는 각각의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 모두에 '하반기 신규과제 연구개시일('10.09.01) 기준 잔여연구기간 6개월 이내 종료('11.03.01 이전 종료)되는 연구과제는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 적용됩니다.

11. 2010년도 하반기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세부 지원유형별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아니오, 가능하지 않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신청은 세부 지원유형별로 모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2010년도 하반기 공모대상 사업인 기본연구의 지원유형** (유형Ⅰ,Ⅱ, 모험연구) 내 **1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기본연구 내의 지원유형 중 1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2. 2010년도 상반기에 신진 or 여성 or 지역에 선정이 되었는데 동일 세부사업이 아니므로 하반기 기본연구(모험연구 포함)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아니오, 가능하지 않습니다. **2010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상·하반기 모두에 걸쳐 1과제만 선정 지원**됩니다. 상반기에 기본연구(모험연구 포함)와 동일한 세부사업이 아닌 신진 or 여성 or 지역 중 1개에 선정되셨더라도, 하반기 기본연구(모험연구 포함)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3. '09년도 및 그 이전('08년도 이후)에 신진 or 여성 or 지역을 지원받아 진행 중인데 2010년도 하반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10년도 이전에 선정된 연구과제 책임자는 **동일한 세부사업에 대한 신규과제 신청만이 제한**되므로, 신진 or 여성 or 지역과 다른 세부사업인 하반기 기본연구(유형Ⅰ,Ⅱ, 모험연구) 내 1개를 선택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4. '09년도 및 그 이전('08년도 이후)에 기본연구를 지원받아 진행 중인데 2010년도 하반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 아니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동일한 세부사업에 대한 신규과제 신청이 제한**되므로 '10년도 이전('09년도 및 '08년도 이전)에 기본연구에 선정된 연구과제 책임자는 동일한 세부사업인 하반기 기본연구(유형Ⅰ,Ⅱ, 모험연구)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旣) 수행 중인 기본연구의 잔여연구기간이 '10년 하반기 연구개시일('10.09.01)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종료('11.03.01 이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부사업인 하반기 기본연구(모험연구 포함)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5. '09년도 이전에 (구)학술진흥재단의 기초연구과제 및 기초과학연구과제를 지원받아 현재 수행 중인 경우, 어느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구)학술진흥재단의 기초연구과제 및 기초과학연구과제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세부단위사업인 **'기본연구'에 해당**하므로,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기본연구(유형Ⅰ,Ⅱ, 모험연구)에 신청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구)학술진흥재단의 사업이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어느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학술진흥재단 사업명		한국연구재단 사업명
신진교수		신진연구*
기초과학과제/기초연구과제		**기본연구**
여성과학자		여성과학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16. 2010년도 하반기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내에서는 모두 몇 개까지 선정·지원이 됩니까?

2010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는 **상·하반기에 걸쳐 1과제만 선정·지원**합니다. 즉, 상반기 선정과제 연구책임자는 하반기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하반기에도 기본연구 세부 유형내에서 1과제만 선정·지원합니다.

단, 이는 2010년도 신규 선정과제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10년도 이전에 선정된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10년도 신규선정 과제를 포함해서 2개 이상의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17. 신청자격에서의 '전임/비전임 교원'에 대한 정의와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구 분	직 급	비 고
전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전임 및 비전임의 세부 직급명은 해당 소속기관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비전임	연구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Post-doc, 박사급연구원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임용된 계약교수도 포함	

※ 비전임 교원은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 명의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름

18. Post-doc 및 박사급 연구원, 또는 시간강사로서 현재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연구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과제가 선정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과 반드시 **고용계약(4대 보험 등을 포함한 전속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사전에 협의 및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세부사항은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르므로 소속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19. 외국인 연구자 또는 외국기관 소속 국내 연구자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까?

-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에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국내소속 대학(교) 교원 및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원'이므로 연구과제 신청 및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0. 민간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신청이 가능한 연구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 2010년도 하반기에 공모 중인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즉, **'기본연구(유형Ⅰ,Ⅱ, 모험연구)'**내 1개를 선택하여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민간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연구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가 해당됩니다.

  해당 민간연구소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 042-869-6199)에 연락하셔서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등록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으셔야 하고, 간접비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21.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까, 또한 연구보조원의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BK21사업에서 타 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참여사항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담당 부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실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내부 인건비 지침 및 기준을 적용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정해진 인건비 100%를 기(旣)지급받고 있으면 미지급용 인건비란에 계상하시고, 인건비 100%를 지급받지 않고 있으면 총 100% 한도 내에서 투입 가능한 참여율로 지급용 인건비란(외부인건비)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또한, BK21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학부생, 석사/박사 과정생이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총 100% 한도 내에서 투입 가능한 참여율로 지급용 외부인건비란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연구보조원 인건비(12개월 투입에 100% 참여율일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09.3.23 일부개정) 제7조(연구개발비의 지급)

·학사과정 1백만원/월 ·석사과정 1백8십만원/월 ·박사과정 2백5십만원/월

Ⅱ. 사업 유형별

기본연구(유형Ⅰ, 유형Ⅱ, 모험연구)

22. 기본연구(유형Ⅰ, 유형Ⅱ, 모험연구)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하는데 이에 대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하반기 2차례 신청이 가능합니까?

기본연구의 상·하반기의 공모에는 지원유형이나 지원형태 및 과제별 지원규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단, 기본연구 전체 신규예산 중 상·하반기 지원 배분은 60:40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하반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3. 2010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기본연구_유형Ⅱ 및 모험연구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9년도 상반기에 지원된 기본연구(개인)가 '10년도에는 기본연구_유형Ⅰ에 해당하며, '09년도 하반기에 지원된 기본연구(협동)는 '10년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10년도부터 기본연구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기본연구_유형Ⅱ는 기존의 유형Ⅰ에 비해 소규모로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5백만원/년(간접비 포함)을 5년간 지원하고 3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년간 계속지원을 결정합니다.

모험연구는 개인 기초연구사업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서, 도전적·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연구신청 및 선정평가가 이루어지며, 1년차 예비연구에 40백만원(간접비 포함)을 지원 후 결과평가를 통해

2~3년차 본연구에 60백만원(간접비 포함)을 지원합니다. 특히 1차년도 예비연구에 대해서는 결과평가 시 '성실실패제도'를 적용합니다.

2010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기본연구를 표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사업	기본연구		
지원분야	유형Ⅰ	유형Ⅱ	모험연구
지원대상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지원형태	개인연구		
지원기간	3년 이내	5년(3+2)	3년(1+2)
과제당 지원규모*	60백만원 내외/년	35백만원 내외/년	40백만원 내외/년
과제당 신청금액**	48백만원 내외/년	27백만원 내외/년	32백만원 내외/년
비고	모험연구로 선정된 과제는 1년차(예비연구)에 40백만원 내외, 2~3년차(본연구)에 60백만원/년 내외 지원		

* 과제당 지원규모는 간접비 포함 금액으로서 '10년 신규과제 지원(1년차) 기준

** 과제당 신청금액은 신규과제 신청 시 연구책임자가 신청할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로서 평균 간접비가 제외된 금액임

24. 기본연구 내 지원유형(모험연구 포함)을 신청한 과제들은 선정평가 시 '기본연구'라는 동일 그룹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과제신청 접수, 그리고 선정평가 및 신규과제 선정 등 모든 과정은 기본연구 내 **지원유형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과제 신청 시 기본연구 내 3개 지원유형 중 1개를 선택하셔야 하고, 만약 기본연구_유형Ⅱ를 선택·신청하셨다면 기본연구_유형Ⅱ에 신청한 과제들과 경쟁하여 선정평가 및 과제선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25. 모험연구에 신청 시 연구계획 내용을 5쪽 이내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거나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모험연구에 신청 시 신청용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내용(연구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부분을 모험적이고 도전적·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5쪽 이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필수 요건사항으로서 연구신청자는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며, 만약 5쪽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은 되지만 **향후 선정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해서는 자동 삭제된 연구내용이 평가자에게 전달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10년도 신규과제 신청 시 1년차 모험연구(예비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만을 제출하고, 1년차 종료 시 예비연구의 실적보고서와 2~3년차(본연구) 연구계획서를 제출

26. 연구참여자별 구분과 그에 따른 신청 가능 인건비 종류는?

	구 분	신청가능 인건비
연구책임자	국내소속 이공학분야 대학 전임교원	- **미지급용 내부인건비**: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소속 이공학분야 대학 비전임교원	- **미지급용 내부인건비**: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용 내부인건비**: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 기본연구의 경우,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원 도 가능	- **미지급용 내부인건비**: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용 내부인건비**: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 소속으로서 고용계약이 체결된 박사급 연구원, Post-doc	- **미지급용 내부인건비**: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용 내부인건비**: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 소속으로서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박사급 연구원, Post-doc	- **미지급용 외부인건비**: 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참여율의 합이 이미 100%일 경우 - **지급용 외부인건비**: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율 합이 100% 미만인 경우 나머지 투입가능한 참여율 계상
	연구책임자와 다른기관 소속으로서 고용계약이 체결된 박사급 연구원, Post-doc	- **미지급용 외부인건비**: 타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용 외부인건비**: 타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연구책임자와 다른기관 소속으로서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박사급 연구원, Post-doc	- **미지급용 외부인건비**: 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참여율의 합이 이미 100%일 경우 - **지급용 외부인건비**: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율 합이 100% 미만인 경우 나머지 투입가능한 참여율 계상
	학사급/석사급 연구원	- **미지급용 외부인건비**: · 타 소속기관에 전속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 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참여율의 합이 이미 100%일 경우 - **지급용 외부인건비**: · 타 소속기관에 전속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율 합이 100% 미만인 경우 나머지 투입가능한 참여율 계상
연구보조원	학부생 · 석/박사 과정생	- **지급용 외부인건비**

※ 지급용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계상시, 계상금액은 해당 사업별 지원유형에서 정하는 전체 지원규모(간접비를 제외한 순수연구비) 내에서 산정

27. 연구비 산정시 인건비와 직접비의 편성비율 및 각각의 산정에 대한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 인건비와 직접비를 각각 어떤 비율로 편성해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항목에서의 금액계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28. 내·외부 인건비에서 미지급용 인건비(*앞장의 <표> 참고)로 계상 시 참여율은 어떻게 계상해야 합니까?

- 미지급용 인건비 계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동비목 계산을 위해서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29. 연구보조원의 참여자격은 무엇입니까?

- 연구보조원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학부생, 석사 및 박사과정생 입니다.

※ 연구과제 진행 중 신분변동(졸업, 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연구개시일 당시의 신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30. 내·외부 인건비 계상 시 작성해야 하는 참여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 내·외부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의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합니다. 참여율은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참여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계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봉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규정 및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입니다.

31. 연구과제별 지원규모에서 밝히고 있는 금액에 비해 신청서 작성 시 신청가능한 금액이 다소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연구_유형Ⅰ의 과제당 지원규모는 60백만원 내외지만 신청 가능한 금액은 48백만원 내외로 안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세부사업의 단위과제별 지원규모에서 밝히고 있는 금액은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간접비'의 총 금액**이며, 신규과제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간접비'를 제**

외한 '순수연구비'만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향후 신규과제 선정 공고 시 교과부 장관이 고시한 소속기관의 간접비율에 근거한 금액을 '순수연구비'(신청금액)에 포함시켜 최종 결정연구비로 지급합니다.

즉, 선생님께서 언급한 기본연구_유형Ⅰ에서 60백만원 내외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향후 신규과제 선정 공고 시 최종 결정연구비로 지급될 규모이고, 48백만원은 간접비가 제외된 신청금액입니다.

32.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예,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신청용 연구계획서에서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표>부분은 한글로 작성하셔야 하고, '연구내용' 부분은 영어로 작성 가능합니다.

33. 신청용 작성요령 및 신청서에 보면 신청금액 단위는 모두 '천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목별 소요명세(1차년도)의 (2) 직접비에서 (가) 연구장비·재료비, (나) 연구활동비, (다) 연구수당을 작성하는 표에서는 금액 단위가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旣) 공지하고 알려드린 신청요강의 '신청용 연구계획서 작성요령'을 보면, **세부 소요내역 및 산출내역을 기입하는 표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양식의 금액단위는 '천원'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언급하신 (2) 직접비의 (가) ~ (다) 부분의 <표>들은 연구비총괄표(양식 A601)에 계상한 직접비에 대한 세부 소요내역 및 산출내역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세부 소요내역 및 산출내역을 작성하는 <표>에서 '원'단위로 입력하여 해당 비목의 신청내역 합계가 최종 '원'단위로 산출되었더라도, **'천원' 단위로 입력해야 하는 란에서는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34. 학생인건비 풀링제란 무엇인가요?

학생 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연구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한 제도로서 완전풀링제 및 부분 풀링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완전풀링제는 man-month 총량제로, 부분풀링제는 기존 신청방법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대학 본부에서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하고 **집행기간을 과제수행 종료시점부터 1년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운영 제도입니다.

35. 소속기관이 학생인건비 풀링제 실시가 가능한 기관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인건비 풀링제 시행기관의 기준은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 중 희망대학은 완전 풀링제(Full Pooling)를, 다른 대학은 부분 풀링제(Partial Pooling)를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연구비 관리부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6. 연구보조원 인건비(대학의 학생인건비) 계상 시 '인건비 풀링제 표'(신청용 연구계획서의 (나)외부인건비의 ② 외부인건비, 양식A602)의 man-month 투입총량 계상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양식A602는 학생인건비 풀링제(풀 풀링제 ; Full pooling)를 실시하는 대학의 연구보조원에 대한 외부인건비를 계상하는 표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 풀링제를 실시하는 대학에서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① 먼저 박사과정 2명(A와 B)에 대해서는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	박사과정	2,500	3.2	8,000	

(합산과정) 박사과정A : 2,500 × 2.4 man-month(6개월×40%) = 6,000

박사과정B : 2,500 × 0.8 man-month(4개월×20%) = 2,000

⇩

박사과정 : 2,500 × 3.2 man-month = 8,000

② 다음으로 석사과정 1명(C)에 대해서는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그러므로 박사과정 2명(A와 B) 및 석사과정 1명(C)에 대한 최종 계상결과(①+②)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학사과정	1,000			
합 계			4.7	10,700	

37.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이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서 제한이 있습니까?

직접비의 연구수당을 계상할 때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뿐 아니라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도 모두 포함**됩니다.

※ 연구비 총괄표(양식A601)의 인건비 소계는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는 합산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연구수당 계상시에는 양식A601의 인건비 소계 금액에 미지급용 인건비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가 모두 포함된 총 인건비에 **최고 20%까지** 연구수당은 계상이 가능합니다.

Ⅳ. 기타 사항

38. (구)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진행하던 전신 사업들은 연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최종연구결과물인 논문 등을 2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전신사업의 계속과제는 **기존의 규칙을 계속 적용**합니다. 그러나 20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부터는 **연구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소정의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연구성과의 경우는 연구종료 후 5년까지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특허 등을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관리시스템(http://pms.nrf.go.kr)'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39. 20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연구수행의 의무사항이었던 '청년 인턴제'를 2010년도에도 시행을 합니까?

아니오, 2010년도에는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40. 신규과제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고, 연구책임자의 신청과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승인 기간에 구분이 있습니까?

2010년도 하반기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기간은 신청공고 및 요강 등에서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본연구		
		유형Ⅰ	유형Ⅱ	모험연구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	'10. 6. 8(화) ~ **'10. 6. 15(화) 18:00**		
	소속기관 승인	'10. 6. 15(화) ~ **'10. 6. 17(목) 18:00**		

단,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전에 즉 6. 15(화)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셔야 하고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도 최종 접수마감 날짜 내에 신청과제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끝.